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12. 9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12.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99. 12. 1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가. 제안이유

- “폐기물재활용및1회용품규제에따른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업무규정”(환경부 예규 제189호 1999. 8. 9)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금액 인하
 - 1차 위반 : 1,500,000원~3,000,000원 → 300,000원~3,000,000원
 - 2차 위반 : 2,500,000원~3,000,000원 → 500,000원~3,000,000원
 - 3차 위반 : 3,500,000원→1,000,000원 ~ 3,000,000원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과태료 부과 금액을 완화하는 이유는?	○ 환경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반업소의 과태료 최하금액이 과다하여 최하금액을 조정 위반업소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9호
의결년월일	1999. 12. 24 (제75회)

제출년월일 : 1999. 12. 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폐기물재활용및1회용품규제에따른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업무규정”(환경부 예규 제189호 1999. 8. 9)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금액 인하

○ 1차 위반 : 1,500,000원~3,000,000원 → 300,000원~3,000,000원

○ 2차 위반 : 2,500,000원~3,000,000원 → 500,000원~3,000,000원

○ 3차 위반 : 3,500,000원→1,000,000원 ~ 3,000,000원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 중 적용범·부과항목 및 부과금액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 지”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범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1. 자원에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3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나. 제1종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다. 제2종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000	3,000
	라.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000	3,0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3,000	3,000	3,000
	3. 제품의포장방법및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기준보다 25% 미만 초과한 때	2,000	3,000	3,000
	(2) 기준보다 25% 이상 초과한 때	3,000	3,000	3,000
나. 포장횟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원의절	(1)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2,000	3,000	3,000
약과재활	(2) 기준보다 2회 이상 더 포장한 때	3,000	3,000	3,000
용촉진에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	3,000	3,000	3,000
관한법률	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라.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 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마.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율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 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사.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감량화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아. 가전제품 제조자 등이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의 미제출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때	3,000	3,000	3,000
	자. 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4.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 15조제5항)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 (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1,000	3,000	3,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객실과 객석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00	1,000	3,00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1,000	3,00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3,000	3,000
	다.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33㎡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2)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3) 매장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 매장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2,000	3,000
	(5)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영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식품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2,000	3,000	3,000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00	1,000	3,00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5.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2항)	500	700	1,000
	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4조제3항)	600	500	1,000